

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9년 12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9일

3. 제안이유

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('99.3.31, 대통령령 제16,213호)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가. 개정사항

1) 조례제명 및 설립목적을 지방공기업법(제49조)에 의거 정비

· 의료원설치조례 → 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

2) 의료원의 출자범위 확대 : 자본금 → 자본금 또는 현물

3) 의료원 정관 기재사항 추가 및 변경

· 기금 → 자본금, 조직 → 조직 및 정원

나. 신설사항

1) 임직원의 비밀누설금지 규정

- 2) 의료원의 공인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
- 3) 비상임이사의 수당, 여비 지급규정
- 4)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
- 5) 지방공사 의료원의 제규정을 제·개정, 폐지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기타사항

- 1) 기타 법령과 충복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행정자치부
준칙(안)에 따라 정비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이는 동 조례의 일부사항을 법령에 부합시키고 현행조례의
불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

□ 지방공기업법에 부합시키는 사항

- “충청북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지방
공사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하고
- 정관 기재사항중 의학의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과 해산에
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
- 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,
기금에 관한 사항을 자본금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
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6조에 부합되도록 함.

□ 현행조례의 불비사항 보완

비밀누설금지, 공인비치, 비상임이사의 수당 및 여비지급, 권한의 위탁, 인사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시 도지사 승인조항을 신설하여 현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

□ 법률과 중복 또는 불합리한 사항 정비

의료원의 경영평가와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률과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이사회의 의결사항인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한 것은 자율 및 책임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

동 조례는 작년 7월에도 개정된 것으로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빈번한 조례개정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※ 불 임 :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(안)